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정 보 공 개 서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0048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0.04.0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2.16

###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95, 정안빌딩 B1-8 호 (주)에이앤제이코퍼레이션

가맹사업부 Tel 02-772-9477 <http://www.burgerfactory.co.kr>

## <목 차>

- I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또는 시, 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 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주)에이앤제이<br>코퍼레이션 | 조슈아버거팩토리<br>외 3개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95, 정안빌딩 B1-8호 |         |              |      |
|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         | 대표팩스 |
|                   | 2020.11.18.      | 2020.12.01.                  | 김명환     | 02-772-9477  | -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7687308               | 사업자등록번호 | 682-87-01985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사용인 | 안병례   | 논노스 외 3개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95, 정안빌딩 B1-8호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        | 대표팩스 |
|     |       |          | 김명환                        | 02-772-9477 |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없음]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조슈아버거팩토리     | Joshua는 성서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선구자, 지도자를 의미하며, 수제버거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수제햄버거전문점을 뜻합니다 |
| 상 호 | 조슈아버거팩토리 OO점 | 당사는 보통 해당지역명 또는 건물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                             |
|----------|-----------------------------------------------------------------------------------|-----------------------------|
| 상표(서비스표) |  | 자세한 내용은 1-9를<br>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바로 전 3년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 연도    | 총자산     | 총부채     | 총자본     | 매출액       | 영업<br>이익 | 당기<br>순이익 |
|-------|---------|---------|---------|-----------|----------|-----------|
| 2021년 | 161,636 | 67,702  | 93,934  | 477,853   | 88,891   | 89,769    |
| 2022년 | 397,526 | 153,615 | 243,911 | 981,081   | 64,174   | 149,976   |
| 2023년 | 377,331 | 82,689  | 294,641 | 1,069,930 | 84,782   | 50,730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 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 가맹사업 관련임원  | 김명환 | 대표이사 | 2023.11.18~현재 | 대표이사 | 업무총괄 |
|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 -   | -    |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1      | -   | -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가맹본부 | (주)에이앤제이<br>코퍼레이션 | 가맹사업경영 | 2020.12.01. ~ 현재 | <b>쇼부</b><br>(등록번호 20150422)라는<br>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
|      |                   |        |                  | <b>제퍼빈스</b><br>(등록번호 20110100389)라는<br>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
|      |                   |        |                  | <b>논노스</b><br>(등록번호 20200486)라는<br>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
|      |                   |        |                  | <b>조슈아버거팩토리</b><br>(등록번호 20200487)라는<br>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출원일<br>등록일                       | 출원번호<br>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존속기간 만료일<br>(가맹본부의<br>사용기간) |
|-------------------------------------------------------------------------------------|-------------------|----------------------------------|-----------------------------|----------------|-----------------------------|
|  | 간판/사인물<br>등의 영업표지 | 2012.07.31. 출원<br>2013.01.17. 등록 | 41-2012-26030<br>41-0249624 | 김태민            | 2033.01.17<br>(2033.01.17)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조슈아버거팩토리] 가맹사업 현황

### 1. [조슈아버거팩토리]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정보공개일 현재 직영점 및 가맹점이 없습니다.)

## 2. [조슈아버거팩토리]의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주)티엠홀딩스          | 조슈아버거팩토리 | 김명환 | 2020.01.01.~2020.11.30  | 서울시 용산구<br>한강대로 48 길 25, 402 호 |
| (주)에이앤제이<br>코퍼레이션 | 조슈아버거팩토리 | 이원규 | 2020.12.01.~2023.11.23.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95,<br>정안빌딩 B1-8 호 |
| (주)에이앤제이<br>코퍼레이션 | 조슈아버거팩토리 | 김명환 | 2023.11.24. ~ 현재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95,<br>정안빌딩 B1-8 호 |

## 3. [조슈아버거팩토리]의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기타외식 | 햄버거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조슈아버거팩토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해당없음]

[조슈아버거팩토리]의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은 없습니다.

## 5. 바로 전 3년간 [조슈아버거팩토리] 가맹점 수 변동현황

[해당없음]

[조슈아버거팩토리]의 최근 3년간 가맹점은 없습니다.

## 6. [조슈아버거팩토리]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조슈아버거팩토리]외에도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br>등록번호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      |               |    | 2021 년말    | 2022 년말 | 2023년말 |
| 가맹<br>본부 | (주)에이앤제이<br>코퍼레이션 | 제퍼빈스 | 20110100389   | 커피 | 3/-        | 3/-     | 3/-    |
|          |                   | 쇼부   | 20150422      | 일식 | 13/4       | 13/4    | 12/4   |

|  |  |     |          |      |     |     |     |
|--|--|-----|----------|------|-----|-----|-----|
|  |  | 본노스 | 20200486 | 기타외식 | -/-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해당없음]

[조슈아버거팩토리]의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은 없습니다.

## 8. [조슈아버거팩토리]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없음]

[조슈아버거팩토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는 없습니다.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없음]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해당없음]

당사에서 [2023년]에 [조슈아버거팩토리]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과 부담하는 기준은 V-9-1)을 참고하십시오.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지점   | 주소              | 전화번호        |
|---------|--------|-----------------|-------------|
| 신한은행    | 용산금융센터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5 | 02-798-8571 |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 목               |            | 내 용                                                                                                                                                       |
|-------------------|------------|-----------------------------------------------------------------------------------------------------------------------------------------------------------|
| 신한은행 계좌<br>있는 사업자 |            | ①신한은행(shinhan.com)인터넷뱅킹에 가입 후 로그인 → ②(금융서비스→기타서비스→가맹금예치제서비스) 클릭 → ③(가맹점사업자서비스가입) 클릭 → ④가맹점사업자 정보입력 →등록 ⑤공인인증 → ⑥휴대폰문자로 가상계좌번호 전송받음 → ⑦전송받은 가상계좌에 예치가맹금 이체 |
| 신한은행 계좌<br>없는 사업자 |            | 신한은행 계좌 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
| 계좌<br>개설시<br>필요서류 | 본인이<br>개설시 |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br>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                   | 대리인<br>개설시 |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br>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br>③ 위임장<br>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귀하는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음]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조슈아버거팩토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대상      | 예치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금액 |
| 기타비용  | 가맹본부/협력업체 | 예치하지않음  | 추정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만원, VAT 포함)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가맹비 | 550               | 계약 체결 시 | 가맹사업법 제 10 조의 경우 일부 반환될 수 있음 | 가맹점모집 및 개설준비를 위해 소요된 실비용 | 가맹사업법 제 10 조에 따라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 공제 (사전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후 가맹비로 전환) |
| 교육비 | 330               |         |                              |                          |                                                                            |

2)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 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 분 | 금액(단위:만원 VAT 없음) | 지급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보증금 | 500              | 계약체결 시 | 가맹계약 위반      | 계약이행보증 |

※ 보증금은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할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만원,VAT포함) |
|-----|-----------------|
| 합계  | 1,380           |
| 가맹비 | 550             |
| 교육비 | 330             |
| 보증금 | 500             |

4)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타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만원/VAT 포함 /50 ㎡ 기준)

| 구 분                 | 지급대상                                                                                                                                                                              | 금 액   | 면적<br>3.3㎡당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총 계                 | -                                                                                                                                                                                 | 7,240 | -             | -                       | -                                                        | -                   |
| 주방설비                | 가맹본부                                                                                                                                                                              | 1,650 | -             | 총액을 8)의<br>기준에 따라<br>분납 | 당사의 귀<br>책사유가<br>없는 한 시<br>공 및 공급<br>이후에는<br>반환될 수<br>없음 | 냉동·냉장고 등<br>주방 기기설비 |
| 인테리어                |                                                                                                                                                                                   | 4,160 | 275           |                         |                                                          | 내장인테리어<br>기본공사      |
| 간판·사인               |                                                                                                                                                                                   | 660   | -             |                         |                                                          | 전면간판/내부실사           |
| 집기/비품               |                                                                                                                                                                                   | 550   | -             |                         |                                                          | 주방집기/그릇/비품          |
| 초도물품                |                                                                                                                                                                                   | 220   | -             |                         |                                                          | 별도 실지입 정산           |
| 그 밖에 별도로<br>소요되는 비용 | 철거, 외부공사, 파사드, 테라스, 의탁자, 창호, 외부닥트, 화장실, 전기증설, 소방,<br>가스공사, 냉·난방기, 영상·음향·보안시설, POS, 소품 등 기본공사 외 사항<br><br>(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공사 시 지방경비 추가)<br><br>* A/S 기간은 1 년이며, 소모품류는 A/S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                     |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가맹점 개점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 특약에 의거 직접 설치/구매 시 설계감리비(VAT포함)-인테리어의 경우 3.3㎡당 (44만원), 기기 설비의 경우 3.3㎡당 (33만원)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 |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당사는 귀하에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특별한 기준 없음<br>보건증 소지자일 것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br>만20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br>보건증 소지자일 것 | 만18세 이상일 것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조슈아버거팩토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 물품의 상세내역은 별도로 첨부해 드리는 물품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규모 : 50 m<sup>2</sup>기준)

| 구분    | 내역                                                                              | 공급업체      | 공급방법     |
|-------|---------------------------------------------------------------------------------|-----------|----------|
| 주방설비  | 냉장,냉동고 등 주방기계·기물                                                                | 가맹본부      | 가맹계약에 포함 |
| 인테리어  | 벽체공사,천정공사,바닥공사,목공공사,전기공사,설비공사,도장공사 등 실내기본공사                                     |           |          |
| 간판·사인 | 전면간판, 내부실사                                                                      |           |          |
| 집기/비품 | 주방집기/그릇/비품                                                                      |           |          |
| 별도    | 철거,외부공사,파사드,테라스,의탁자,창호,외부닥트,화장실,냉난방기,소방,가스공사,전기증설,POS,소품,영상·음향·보안시설 등 기본공사 외 사항 | 가맹본부/자체조달 | 별도계약     |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8) 가맹금 등의 분납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 등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와의 특약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맹금 등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총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 금액(만원) |    | 총액의 40% | 40%     | 20%     |
| 납부일    |    | 계약일     | 계약일+10일 | 기기입점-3일 |
| 비고     |    |         |         |         |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판촉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VAT포함)                                                                                           | 지급기한 및 방법                   |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로열티                | 가맹본부 | 22만원/월                                                                                              | 매월 말일<br>CMS이체 또는<br>물류여신차감 | 영업표지 사용에<br>대한 대가이며<br>반환되지 않음 |
| 영업표지 변경<br>에 따른 비용 |      | BI·CI를 개발 및<br>투자 등에 소요되<br>는 비용은 당사가<br>부담하고, 귀하의<br>가맹점 간판변경,<br>기타 설비변경 등<br>의 비용은 귀하가<br>부담합니다. | 영업표지<br>변경 시                | 변경설치 된 이후에는<br>반환되지 않음         |
| 교육훈련비              |      | 자세한 내용은 VII-1을<br>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개시 이후에는<br>반환되지 않음           |
| 광고/판촉비             |      | 자세한 내용은 V-8-1)을<br>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광고/판촉 실시 이후에는<br>반환되지 않음       |
| 지연이자               |      | 연20%                                                                                                | 지급기일의 익일<br>부터 지급일까지        |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부담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해당없음]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감독항목 | 내용                        | 시기   | 비고                       |
|------|---------------------------|------|--------------------------|
| 재고관리 | 실재고수량을 조사하여<br>장부상 재고와 비교 | 분기1회 | 문의: 가맹관리팀<br>02-772-9477 |
| 회계관리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br>에 대한 회계조사 | 년 1회 | 문의: 회계관리팀<br>02-772-9477 |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교육은 갱신, 재계약의 필수과정으로 보수교육비 (330만원 VAT 포함)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신규 가맹교육과 동일한 조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승계하는 것에 귀하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른 사업자와 귀하의 가맹계약체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①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 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제 3 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만료될 경우 당사는 만료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BI · CI 를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 가맹점 내의 간판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② 경우에 따라 당사보유의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권리분쟁 등으로 무효 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른 대체 후속조치의 비용부담은 ①항의 경우와 같습니다.

③ 또한 당사가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를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당사의 [조슈아버거팩토리]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당사와 새로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맹비(550 만원 VAT 포함) 및 교육비 (330 만원 VAT 포함)를 당사에 지급하고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500 만원 VAT 없음)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귀하는 가맹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당사의 영업표지 및 가맹점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폐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영업관련 자산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 및 인터넷사이트 내 점포정보 등 모든 가맹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의 해지·종료 시 당사의 영업표지를 철폐하지 아니하고 계속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한 지체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는 당사가 제공한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③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또는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당사 브랜드의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 재판매가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귀하가 [조슈아버거팩토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포설비/상품 등의 구입·설치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받으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없으면 본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릅니다.]

## 나) 주요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없음]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없음]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 또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권유)하여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개점 전 당사가 승인한 메뉴만 판매해야 합니다. 승인된 메뉴 외에 다른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판매 메뉴의 종류, 가격, 레시피, 원가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귀하와 개점 전 승인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 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당사 홈페이지 또는 운영매뉴얼의 메뉴<br>(www.burgerfactory.co.kr) | 당사 홈페이지의 메뉴 또는 운영매뉴얼의 메뉴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br>(2차서면경고 후 계약해지) |    |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의 판매 제한

①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 보호는 물론 귀하의 영업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알코올이 첨가된 음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원/부재료를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 영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의 당사 가맹점사업자의 물품부족 비상 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품별 권장 판매가격은 별도로 제공하는 메뉴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범위를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계열사포함)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범위내에 동일업종 영업표지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개설 하지 않습니다. 동일업종의 범위 및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당사(계열사포함)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업종의 범위             | 동일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동일·유사한 음식을 판매하는 가맹사업 | 조슈아버거팩토리  | -    |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 보호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500M 내에는 동일한 영업표지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설치하지 않음 | 별지에 영업지역 보호범위 표시<br>(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집객시설 및 공항, 호텔, 병원, 지하철·철도역사, 관공서, 학교, 대형오피스빌딩 구내 등은 특수상권으로서 영업지역보호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사업자와의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재개발,신도시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br>② 해당상권의 거주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해당상품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위에 준하는 사유로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발생→당사담당팀 검토→영업지역변경(안)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지역 변경완료 | 영업지역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br>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점포 입점 가능)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조슈아버거팩토리]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해당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해당없음]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① [조슈아버거팩토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2 ]년입니다.

② 갱신 재계약 시 계약기간은 [ 1 ]년입니다.

### 2)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br>(계약만료: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A | ①+15 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br>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 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관련계약조문: 제11조2항)                                                                                                                                                                                                                                                                                                                                                                   |
|----------------------------------------------------------------------------------------------------------------------------------------------------------------------------------------------------------------------------------------------------------------------------------------------------------------------------------------------------------------------------------------------|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br>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br>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부재료의 조달 및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br>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br>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귀하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해지 사유(관련계약조문: 제12조1항) |
|--------------------------|
|--------------------------|

|                                                                                                                                                                                                          |
|----------------------------------------------------------------------------------------------------------------------------------------------------------------------------------------------------------|
| 1.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 2. 제 5 조 영업지역의 설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 3. 제 6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br>① 로열티의 지급 ②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 ③ 물품의 조달과 관리 ④ 거래상대방에 따른 원/부재료 판매의 제한 ⑤ 메뉴판매의 제한 ⑥ 가격결정의 제한 ⑦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⑧ 운영매뉴얼의 준수 ⑨ 유니폼 착용 ⑩ 광고 및 판촉 ⑪ 경업금지 ⑫ 보험가입 |
| 4. 제 7 조 제 2 항 노후시설의 교체·보수 및 시설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
| 5. 제 7 조 제 3 항 실내장식, 점포확장/축소 및 이전, 외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 6. 제 8 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 7. 제 9 조 “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
| 8.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 9. 제 18 조 제 2 항 “을”의 요건 변동 시 “갑”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
| 10. “을”이 “갑” 또는 “갑”의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11.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 12. “을”이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귀하가 위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즉시해지 사유(관련계약조문: 제12조2항)

-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⑥ 귀하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수정사유(관련계약조문: 제13조)

가맹본부의 영업방침 또는 가맹사업의 환경변화 등 변경사유 발생 시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수정사유발생→당사검토→수정계약서(안)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수정 완료 |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br>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br>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br>효력 발생 |

당사는 계약수정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까지 기존계약대로 이행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가능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양수인이 당사와 양도인 간의 가맹계약서 상의 모든 권리·의무 및 조건과 당사의 가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및 가맹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및 보증금을 납입하고 해당 교육이수)→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br>가맹관리팀<br>02-772-9477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당사와 새로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의 대리행사, 위탁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6-2)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 구분   | 가능여부(조건) | 이전범위    | 절차         |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 통지시  | 모든 권리의무 | V-6-2)의 절차 | 교육비지급/교육수료 |
| 대리행사 | 당사 승인시   | 지정한 범위  | -          | -          |
| 위탁   | 당사 승인시   | 지정한 범위  |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조슈아버거팩토리]의 메뉴, 원/부재료, 운영시스템, 디자인 등은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 노력 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로서 계약의 존속 중이나 종료 후에도 귀하 또는 제 3 자 명의로 동일·유사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한기간                 | 제한지역    |
|----------------------|---------|
| 계약기간 및<br>계약종료 후 2 년 | 국내 전 지역 |

만약 귀하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경업금지업종    | 경업허가절차                                                 | 비고                       |
|-----------|--------------------------------------------------------|--------------------------|
| 동일·유사한 업종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br>경업허가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br>30일내 허가여부 통지→ 완료 | 문의: 가맹관리팀<br>02-772-9477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조슈아버거팩토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고객 이용편의를 위해 연중무휴로 영업하며 개,폐점 시간을 항상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             |                                                            |                          |
|-------------|------------------------------------------------------------|--------------------------|
| 10:00~22:00 | 연중무휴 영업<br>(휴업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사전에<br>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가맹관리팀<br>02-772-9477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에 의거 오전 0시부터 오전 4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 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인력         | 비고                   |
|---------|----------|-----------------|----------------------|
| 2 명이상   | 직접 근무    | 점주의 배우자<br>직계가족 | 점주 부재시<br>가맹본부에 사전통보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항목          | 감독절차                                       | 빈도/시기 | 비고        |
|---------------|--------------------------------------------|-------|-----------|
| Quality(품질관리) | 매뉴얼준수, 자점매입<br>여부확인→관리표작성→가맹점 확인<br>인서명→완료 | 1회/월  | 담당 S/V 방문 |
| Service(서비스)  | 고객접대, 종업원친절도확인→<br>관리표작성→완료                | 1회/분기 | 담당자 암행방문  |
| Cleanness(청결) | 주방위생, 매장청결도확인<br>→관리표작성→가맹점확인서명→<br>완료     | 1회/월  | 담당 S/V 방문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조슈아버거팩토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성격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분담절차 |
|----|------|------|-------|------|
|----|------|------|-------|------|

|    |          |                        |                |                     |                                                                                                                                 |
|----|----------|------------------------|----------------|---------------------|---------------------------------------------------------------------------------------------------------------------------------|
| 광고 | 전국<br>광고 | 브랜드광고                  | 30%            | 70%중 가맹점수에 따라 안분    | 광고 및 판촉행사 실시 30일 전<br>계획안 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br>→<br>가맹점의 행사 참여<br>(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전체적<br>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환기<br>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br>니다.) |
|    |          | 브랜드광고<br>+ 가맹점<br>모집광고 | 50%            | 50%중 가맹점수에<br>따라 안분 |                                                                                                                                 |
|    |          | 가맹점모집<br>광고            | 100%           | -                   |                                                                                                                                 |
|    | 개별광고     |                        | -              | 100%                |                                                                                                                                 |
| 판촉 | 판촉행사     |                        | 기획 및<br>디자인 부담 | 판촉행사실비/<br>인쇄출력비 부담 |                                                                                                                                 |

광고 및 판촉활동은 당사는 물론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귀하는 불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하기 20일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식재료, 상품, 생산방법, 조리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되었거나 취득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비밀의 범위                                                                                               | 기간                                                        |
|--------------------------------------------------------------------------------------------------------|-----------------------------------------------------------|
| 당사가 공급한 전용 식재료 상품과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영업비밀 보호의무는<br>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br>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br>유지됩니다. |

## 11. 가맹계약 위반 등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위반사항                             | 위약금     | 관련계약조문 |
|------------------------------------|---------|--------|
| 계약해지, 종료 후의 조치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 일 30만원  | 제17조1항 |
|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 1,000만원 | 제17조2항 |
|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는 경우    | 2,000만원 | 제17조2항 |
|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보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3,000만원 | 제17조3항 |

②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인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금액                                                     |
|----------------|--------------------------------------------------|---------------------------------------|--------------------------------------------------------|
| 합계             | -                                                | 45~52일<br>(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br>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br>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전화, 홈페이지문의, 방문                                  | 7일~14일<br>(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                                                        |
| 사업설명, 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br>-인근10개가맹점현황문서 제공<br>-가맹희망자 상담 |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상권분석                                      | 필요 시 실시                               |                                                        |
|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 -투자비 산출<br>-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 확인                      | 3일                                    |                                                        |
|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사전교부<br>-가맹금 및 개설비용 납부                    | 2일                                    |                                                        |
| 공사 착수          | -공사 실시<br>(종업원 채용)                               | 30일                                   |                                                        |
| 교육실시           | -메뉴 및 서비스 교육<br>(공사기간 중 실시)                      | 5일                                    |                                                        |
| 영업설비/집기 입고     | -냉장고 등 주방설비 입고<br>-집기, 비품 등 입고                   | 2일                                    |                                                        |

|         |                            |    |  |
|---------|----------------------------|----|--|
| 초도물품 입고 | -유니폼 등 입고<br>-식자재,부자재 등 입고 | 1일 |  |
| 그랜드오픈   | -영업시작<br>-판촉 및 홍보이벤트       | 당일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기간연장 협의 시
- 교육 이수 또는 습득이 늦어질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시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유관기관의 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분담 등의 지원이 없습니다.]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
| 가맹본부<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회계 등 가맹점<br>운영 전반에 대한<br>경영지도 | 가맹본부는<br>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기간,<br>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br>소요비용 등 포함)를<br>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br>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br>가맹본부 담당자가<br>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br>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br>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 부담                                              |
| 가맹점사업자<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회계 등 가맹점<br>운영 전반에 대한<br>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br>가맹본부는<br>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기간,<br>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br>소요비용 등 포함)를<br>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br>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br>가맹본부 담당자가<br>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br>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br>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부담<br>(가맹금에 포함된<br>통상의 경영지도 외<br>외부컨설팅 부분에<br>한함)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가맹관리팀(02-772-94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의 지원 내역

[해당없음]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조슈아버거팩토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교육<br>(개점전)      | 메뉴 제조방법 및<br>개점 전에 필요한<br>제반 교육 | 실습교육<br>(당사 교육장 또는<br>해당 점포) | 신규계약 후<br>1개월이내   | 필수교육             |
| 신메뉴<br>교육<br>(개점후) | 조리교육 등                          | 집체 교육 또는<br>개별 교육            | 신메뉴 출시<br>15일이내   | 신메뉴 출시 시<br>필수교육 |
| 요청교육<br>(개점후)      | 요청사항                            | 실습교육<br>(해당 점포)              | 요청 후<br>10일이내     | -                |
| 보수교육               | 신규교육과 동일                        |                              | 갱신·재계약 후<br>1개월이내 | 갱신·재계약 시<br>필수이수 |

당사의 신메뉴 개발은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등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해당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조슈아버거팩토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VAT포함)         | 비고                       |
|-------|-----------------------------------------|-------------------|--------------------------|
| 신규교육  | 40시간                                    | 330만원 및<br>재료비 부담 | 최초계약, 영업양수,<br>상속 시 필수이수 |
|       | 점주 및 직원의 동시·집합 교육이며, 추가인원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                   |                          |
| 신메뉴교육 | 메뉴에 따라 다름                               | 재료비 부담            | 신메뉴출시 시 필수이수             |
| 요청교육  | 요청내용에 따라 다름                             | 인건비 실비부담          | -                        |
| 보수교육  | 신규교육과 동일                                |                   | 갱신·재계약 시<br>필수이수         |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종업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원추가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개점연기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해당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메뉴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④ 귀하가 가맹계약의 갱신·재계약 시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해당없음]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2-772-947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burgerfactory.co.kr](http://www.burgerfactory.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